

KERI Brief

세목별 조세부담수준의 국제비교 및 시사점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dwlim@keri.org)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 및 저출산, 가계부채, 청년실업의 증가로 재정지출의 지속적인 확대가 예상되지만, 경제성장률 둔화가 현실화된다면 안정적인 재정건전성의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재정수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세수입(60.6%, 2020년 예산 기준)의 확대가 필요하지만, 국세수입의 전망은 긍정적이지 않다. 사회적, 경제적 여건에 따른 재정수요의 확대 지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증세가 아니라, 주요 세목별 부담수준의 현황 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조세구조조정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제적으로 비교 검토한 결과 우리나라의 GDP 대비 조세부담수준은 법인세(8위)가 높고, 소득세(30위)와 소비세(31위)는 낮은 수준이다. 다른 세목에 비해 법인세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세부담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조세구조가 비효율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OECD 평균

보다 높은 법인세 부분은 낮추고, 낮은 소득세와 소비세 부분은 높이는 다음과 같은 조세상 구조조정을 하되 전체적인 세수입은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 번째, OECD 8위 수준인 법인세 분야는 부담수준을 낮추고 국제적인 법인세 인하 추세에 부합하기 위해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하고 과세구간을 줄여야 한다. 두 번째, 부담수준이 매우 낮은 소득세 분야는 부담을 높이기 위해서 과도한 비과세·감면을 점진적으로 줄여서 면세자 비율을 낮춰야 한다. 마지막으로 OECD 31위로 최하위 수준인 소비세의 부담을 높이면 우선 과도한 간이과세자에 대한 혜택을 줄여야 할 것이다.

I. 검토 배경

□ 기획재정부는 8월 말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여 2019~2023년 재정지출이 연평균 6.5% 증가해서 2023년 604조 원에 달한다고 했지만, 국세수입은 연평균 3.4%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¹⁾

○ 재정지출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내년도 국세수입은 292조 원(전년 대비 △2.8조 원)으로 예상되어 2010년 이후 처음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작년 발표한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예측한 2020년 국세수입 312.7조 원보다 20조 원 이상 감소했음

- 정부는 반도체 수출 감소 등으로 인한 법인세 감소(△14.8조 원)와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율 인상(△5.1조 원)으로 세수 추세가 감소로 돌아섰다고 함

○ 또한 2019~2023년 국세수입의 연평균 증가율은 3.4%로 재정지출의 연평균 증가율 6.5%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가 예상되며, 이 수치는 경제성장률의 둔화에 따라 감소할 수도 있음

□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 및 저출산, 가계부채, 청년실업의 증가로 재정지출의 지속적인 확대가 예상되지만, 경제성장을 둔화가 현실화된다면 국세수입 등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므로 안정적인 재정건전성의 확보가 어려울 수 있음

○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재정수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세수입(60.6%, 2020년 예산 기준)*의 확대가 필요하지만, 국세수입의 전망은 긍정적이지 않음

* 재정수입은 국세수입, 세외수입, 기금수입으로 구성됨

○ 한편, 무분별한 증세를 할 경우 과도한 조세부담은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저해하고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세수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증세는 신중할 수밖에 없음

□ 사회적, 경제적 여건에 따른 재정수요의 확대 지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증세가 아니라, 주요 세목별 부담수준의 현황 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조세구조 조정방안이 필요함

○ 재정수입, 특히 국세수입의 확대를 위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세구조조정방안이 필요한 상황임

○ 이에 본 연구는 세목별 비중 및 GDP 대비 조세부담을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에 기초한 적정조세부담수준의 개선방안을 검토하려 함

1) 기획재정부,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내용", 2019.8.

II. 조세부담수준의 국제비교

-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하락했던 조세부담률이 서서히 상승하고 있음
- 우리나라와 OECD 평균 조세부담률의 격차는 2010년대 중반까지 증가하다가 2015년도부터 조금씩 감소하고 있음
- 주요 세목별 비중 및 GDP 대비 조세부담수준²⁾을 OECD 회원국들과 비교하려 함

1. 주요 세목별 비중

- 2017년 우리나라의 총조세 대비 법인세 비중은 OECD 평균보다 4.6%p 크고, OECD 회원국 중 5위로 높은 수준임
- 총조세 대비 법인세 비중은 계속적으로 OECD 내에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음

2) 각 국가별로 세입 및 경제 규모가 다른 점을 반영하여 GDP 대비 세목별 수입으로 조세부담수준을 검토하려고 함

〈표 1〉 우리나라와 OECD 조세부담률의 추이

구분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한국 (A, %)	18.8	18.3	17.4	17.1	17.0	17.8	17.6	17.2	17.4	18.4
OECD 평균 (B, %)	25.0	24.9	24.7	24.6	24.3	24.1	23.7	23.5	23.3	24.3
B - A (%p)	6.2	6.6	7.3	7.5	7.3	6.3	6.1	6.3	5.9	5.9

자료: OECD Tax Database

〈표 2〉 총조세 대비 법인세 비중의 추이

(단위: %)

구분	2017	2015	2010	비고
한국	13.6	13.1	13.8	5위 (2017년)
미국	7.6	8.1	7.6	
일본	12.0	12.3	11.6	
프랑스	4.5	4.6	5.5	35위 (2017년)
영국	8.3	7.5	8.9	
OECD 평균	9.0	8.8	8.6	

자료: Revenue Statistics 2018, OECD, 2018

□ 2017년 우리나라의 총조세 대비 소득세수 비중은 2010년에 비해 3.4%p 증가했지만, OECD 평균 보다는 6.2%p 작은 수준임

○ 2017년 기준 OECD 회원국 중 26위로 하위권에 속하고 있으며, 최상위권인 미국과는 20%p 이상 차이가 나고 있음

□ 2017년 우리나라의 총조세 대비 소비세수 비중은 2010년에 비해서 크게 감소했으며, OECD 평균 보다 4.6%p 낮은 상황임

○ 2010년에는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었으나, 다른 국가들이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비세율을 인상했음³⁾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세율을 그대로 유지하여 소비세 비중이 OECD 평균보다 낮아진 것으로 보임

3) 2010년 대비 현재 소비세(부가가치세)를 인상한 OECD 국가는 22개국이며, OECD 평균 부가가치세율은 2010년 17.6%에서 현재 19.3%로 상승했음

〈표 3〉 총조세 대비 소득세 비중의 추이

(단위: %)

구분	2017	2015	2010	비고
한국	17.6	17.2	14.2	26위 (2017년)
미국	40.3	40.5	34.8	3위 (2017년)
일본	18.6	18.9	18.6	
프랑스	18.8	18.8	17.0	
영국	27.4	27.7	28.7	
OECD 평균	23.8	24.1	22.9	

자료: Revenue Statistics 2018, OECD, 2018

〈표 4〉 총조세 대비 소비세 비중의 추이

(단위: %)

구분	2017	2015	2010	비고
한국	28.1	28.0	33.7	25위 (2017년)
미국	16.9	16.9	18.3	36위 (2017년)
일본	20.4	21.0	18.7	
프랑스	24.4	24.2	24.8	
영국	32.3	33.0	30.9	18위 (2017년)
OECD 평균	32.7	32.6	33.2	

자료: Revenue Statistics 2018, OECD, 2018

2. GDP 대비 조세부담수준

□ 우리나라의 GDP 대비 법인세 부담은 OECD 평균보다 0.7%p 높으며, OECD 회원국 중 8위에 해당함(2016년 기준)

○ 뉴질랜드(4.9%), 호주(4.6%), 룩셈부르크(4.6%), 칠레(4.2%), 노르웨이(4.0%), 일본(3.7%), 터키(3.7%) 등이 우리나라보다 GDP 대비 법인세 부담이 높은 국가임

- 룩셈부르크(19%)를 제외하고는 모두 법인세율이 20%를 넘는 국가들이며, 특히 우리나라와 칠레는 2010년 대비 현재 법인세율을 인상한 6개국에 포함됨⁴⁾

□ 우리나라의 GDP 대비 소득세 부담은 OECD 평균보다 3.6%p 낮고, OECD 회원국 중 30위에 해당해서 최하위 수준임(2016년 기준)

○ 칠레(1.8%), 슬로바키아(3.3%), 멕시코(3.4%), 터키(3.7%), 체코(3.8%), 리투아니아(4.0%) 등이 우리나라보다 GDP 대비 소득세 부담이 낮음

4) 인상 국가는 슬로바키아, 멕시코, 아이슬란드, 그리스, 칠레, 대한민국임

〈표 5〉 법인세 부담 국제비교 (OECD, 2016년 기준)

(단위: %)

구분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OECD 평균
GDP 대비 법인세 부담수준	3.6	2.0	3.7	2.0	2.7	2.9
순위	8위	28위	7위	28위	16위	-

자료: Revenue Statistics 2018, OECD, 2018

〈표 6〉 소득세 부담 국제비교 (OECD, 2016년 기준)

(단위: %)

구분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OECD 평균
GDP 대비 소득세 부담수준	4.6	10.4	5.7	8.6	9.0	8.2
순위	30위	11위	26위	21위	14위	-

자료: Revenue Statistics 2018, OECD, 2018

□ 우리나라의 GDP 대비 소비세 부담은 OECD 평균보다 2.6%p 낮고, OECD 회원국 중 31위에 해당하는 매우 낮은 수준임(2016년 기준)

- 미국(2.0%), 스위스(3.4%), 호주(3.7%), 멕시코(3.9%), 일본(4.1%) 등 우리나라보다 GDP 대비 소비세 부담이 낮음

□ 개별 세목 모두 GDP 대비 조세부담수준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법인세는 계속 증가하고 있음

- 소득세와 소비세는 등락을 반복하며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OECD 평균에 못 미치고 있음

〈표 7〉 소비세 부담 국제비교 (OECD, 2016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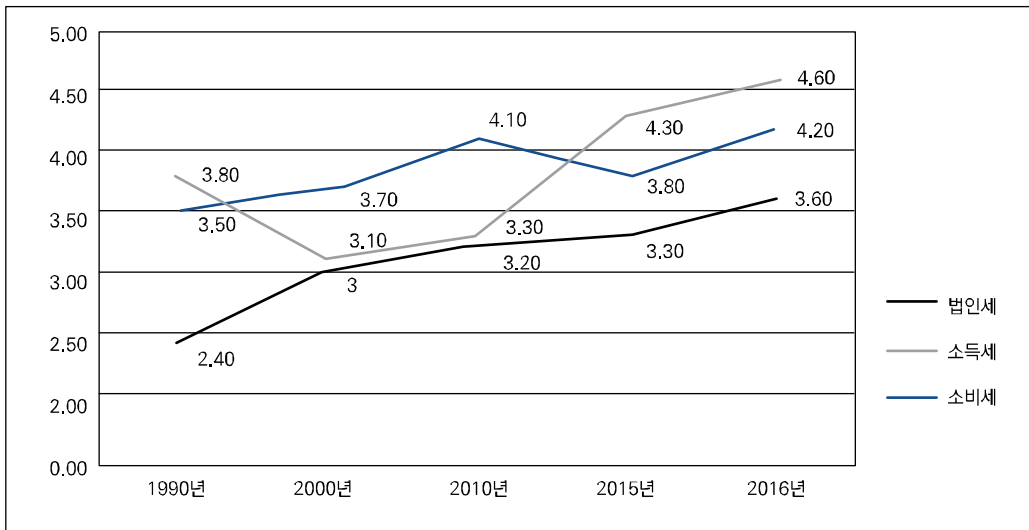
(단위: %)

구분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OECD 평균
GDP 대비 소비세 부담수준	4.2	2.0	4.1	7.1	6.8	6.8
순위	31위	36위	32위	17위	21위	-

자료: Revenue Statistics 2018, OECD, 2018

〈그림 1〉 GDP 대비 세목별 조세부담 추이

(단위 : %)



자료: Revenue Statistics 2018, OECD, 2018

III. 세목별 조세부담수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앞서 국제적으로 비교 검토한 결과 우리나라의 GDP 대비 조세부담수준은 법인세(8위)가 높고, 소득세(30위)와 소비세(31위)는 낮은 수준임

- 다른 세목에 비해 법인세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세 부담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조세구조가 비효율적인 것으로 평가됨
- OECD 평균보다 높은 법인세 부분은 낮추고, 낮은 소득세와 소비세 부분은 높이는 조세상 구조조정을 하되 전체적인 세수입은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임

1. 법인세

□ 우리나라는 2010년대 중반까지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추세였으나, 2017년 말 세법개정으로 최고세율이 22%에서 25%로 인상되었음

- 2017년 인상으로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5%가 되어 OECD 평균(21.9%)보다 높아졌고 OECD 35개 국가 중 8번째로 세율이 높게 되었음⁵⁾

○ 2010년 대비 현재 법인세율이 인상된 OECD 국가는 우리나라 포함 6개국뿐이며⁶⁾ 인하 국가는 19개국⁷⁾으로 현재 국제적인 흐름은 법인세 인하임

- 법인세 최고세율의 OECD 평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30.2%(2000년) → 23.9%(2008년) → 22.5%(2016년) → 21.9%(현재)],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은 추가적으로 법인세 인하를 결정했음⁸⁾
- 아시아 주변국의 법인세율⁹⁾도 우리나라보다 낮은 상황이므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을 것임

- 5) 우리나라보다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는 프랑스(33.3%), 호주(30%), 멕시코(30%), 벨기에(29%), 그리스(29%), 뉴질랜드(28%) 등임. 인상 전 법인세율은 22%로 OECD 국가 중 16번째로 높은 국가였음
- 6) 인상 국가는 슬로바키아, 멕시코, 아이슬란드, 그리스, 칠레이고, 변동이 없는 국가는 10개국임
- 7) 인하 국가는 캐나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헝가리,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영국, 미국임
- 8) 영국은 2020년부터 19%에서 17%, 일본은 2020년부터 23.2%에서 20%, 프랑스는 2022년부터 33.3%에서 25%로 인하하기로 함
- 9) 대만 17%, 싱가포르 17%, 홍콩 16.5%, 태국 20%, 일본 23.2%, 중국 25%

〈표 8〉 법인세율 개정 연혁

과표구간	'96년	'97~'02년	'03~'05년	'06~'08년	'09년	'10년	'11~'12년	'13~'17년	'18년~
~1억 원	18%	16%	15%	13%	11%	11%	10%	10%	10%
1~2억 원	30%	28%	27%	25%					
2~200억 원					25%	22%	22%	20%	20%
200~3천억 원								22%	22%
3천억 원~					22%	25%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의 과세표준 구간은 2단계를 유지하다가 2013년부터 3단계로 확대되었고, 2018년부터는 최고세율 인상과 구간 신설(3천억 원 초과)로 4단계가 되었음

- OECD 대부분의 국가들은 단일세율구조를 가지고 있고, 3단계 이상 세율구조를 가진 국가는 우리나라와 벨기에밖에 없어 국제적 흐름에 부합하지 않음¹⁰⁾

* 벨기에는 4단계 누진구조이지만,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의 기준금액이 322,500유로(약 4.2억 원)로 매우 낮아 실질적으로 누진구조가 아닐 수 있음

- 2단계의 세율구조를 가진 국가들은 중소기업 및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낮은 세율을 적용하기 위해 구간을 추가한 것이고, 우리나라처럼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의 기준금액이 3천억 원을 초과하는 국가는 없음¹¹⁾

□ 법인세 분야는 부담수준을 낮추기 위해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하고 과세구간을 줄여야 함

○ 미국을 비롯한 OECD 대부분의 국가들이 법인세 인하로 국내기업의 해외이탈을 막고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인하여 경제성장을 꾀하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도 세계적 추세에 맞게 법인세율의 인하가 요구됨

- OECD 국가 중 8번째로 높은 법인세율은 경기 둔화 우려가 높아지는 현재 상황과 국제적인 법인세 인하 흐름에 부합하지 않으며, 기업활동 및 경제성장에 부담¹²⁾을 주므로 인하되어야 함

- 미국이 법인세를 큰 폭으로 인하하면서 미국으로의 자본 쏠림현상이 발생하고 고용증가와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함

○ 또한 법인세의 누진구조에 따른 소득재분배기능은 거의 없고 법인세 부담은 대부분 일반 경제주체인 일반인에게 귀착되므로,¹³⁾ 과세표준 구간의 축소도 동시에 추진되어야 함

10)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현황(OECD)

구간	해당 국가
1단계 (단일 세율)	호주, 오스트리아,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헝가리, 독일, 이스라엘,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일본, 이탈리아,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라트비아, 미국, 터키, 영국, 캐나다 (총 29개국)
2단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프랑스, 리투아니아 (총 5개국)
4단계	벨기에, 한국 (총 2개국)

자료: OECD Tax Database.

11) 조경엽, "법인세 인상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경제연구원 세미나 발표자료, 2016, p.41

12) 법인세는 일반적으로 자본비용을 증가시켜 투자 및 경제생 산량을 낮추고, 근로자의 임금과 투자자의 수익을 낮추는 영향을 줄 수 있음. 법인세 인상의 영향을 추정한 연구에서도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3.3%)으로 GDP가 연평균 1.12% 감소하고, 국내투자가 20조 9천억 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조경엽, "법인세 비용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연구원, 2019.)

13) 연구에 따르면 법인세의 30%는 소비자에게, 20%는 근로자에게, 50%는 주주에게 귀착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주주를 대주주와 소액주주로 나눌 경우 대주주에게 귀착되는 비중은 20%에 불과함(조경엽, "법인세, 누가 부담하는가?", KERI Insight 15-10, 한국경제연구원, 2015.)

〈표 9〉 법인세율 인하(안)

과세표준	현 행	개선안	
2억 원 이하	10%	10%	(-)
2억 원 초과 2백억 원 이하	20%	20%	(-)
2백억 원 초과 3천억 원 이하	22%	22%	(-)
3천억 원 초과	25%		(↓ 3%p)

2. 소득세

□ 우리나라의 소득세부담수준이 OECD에 비해 많이 낮은 이유는 비과세감면이 많아 실효세율이 낮고 면세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임

○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의 실효세율은 조금씩 상승하고 있지만, 명목 최고세율 42%(지방세 포함 46.2%)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임

- 우리나라의 소득세 최고세율 42%는 OECD 평균 35.7%보다 높지만, 다양한 공제제도가 지나치게 많기 존재하기 때문임

○ 특히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은 2014년 세액공제 개정 후 많은 후속조치¹⁴⁾로 급격하게 증가했고(32.4% → 48.1%), 여전히 40%대를 넘어 높은 상황임

- 우리나라 근로소득의 면세자 비율은 주요 외국(미국 32.5%, 일본 15.4%, 호주 16.6%, 영국 0.9%, 2014년 기준)보다 지나치게 높음

○ 소득세 관련 공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이 있으며 그 종류가 다양하고 범위가 과도해서 2017년 기준 종합소득금액 대비 결정세액의 비중은 14.8%에 불과함

- (소득공제) 인적공제,¹⁵⁾ 연금보험료 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공제, 특별공제,¹⁶⁾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¹⁷⁾ 등

- 14) 자녀세액공제 확대(3자녀부터 1명당 30만원, 6세 이하 2자녀부터 15만 원 추가 공제), 출산·입양세액공제 신설(자녀 1명당 30만 원 공제), 연금세액공제 확대(급여 5,500만 원 이하자 공제를 12→15% 인상), 표준세액공제 인상(12→13만 원 인상) 등임.
- 15) 기본공제(인당 150만 원), 추가공제(경로 100만 원, 장애인 200만 원, 부녀자 50만 원, 한부모공제 100만 원).
- 16) 보험료 공제(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주택자금공제(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 17) 주택마련저축공제, 신용카드소득공제, 소상공인 공제부금 등

〈표 10〉 소득세 최고세율 국제비교 (OECD, 2019년 기준)

(단위: %)

구분	한국	일본	미국	스웨덴	스위스	OECD 평균
소득세 최고세율	42	45	37	25	11.5	35.7
순위	14위	7위	18위	27위	36위	-

자료: OECD Tax Database

〈표 11〉 소득세 실효세율

(단위: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종합소득자	13.4	13.8	14.4	14.5	14.6	14.8
근로소득자	4.3	4.5	4.8	5.0	5.1	5.5
※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	33.2	32.4	48.1	46.8	43.6	41.0

자료: 국제통계연보

- (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¹⁸⁾ 자녀세액공제,¹⁹⁾ 특별세액공제,²⁰⁾ 연금계좌세액공제,²¹⁾ 배당세액공제,²²⁾ 기장세액공제, 전자신고공제 등
-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의 조합배당소득,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산림개발소득 세액감면 등

□ 부담수준이 최하위 수준인 소득세 분야는 부담을 높이기 위해서 비과세·감면을 줄여서 면세자 비율을 낮춰야 함

- 소득세 최고세율은 OECD 평균세율보다 높고 OECD 국가 중 14위이므로 세율을 인상하는 것보다 과도한 비과세·감면을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임
- 과도한 조세지원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저소득층도 최소한의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최저한세제도²³⁾를 도입해야 함

- 현재 고소득층에 대해서만 징벌적 증세를 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²⁴⁾은 타당하지 않으며, 이는 세수증대보다는 인력 및 자산의 유출로 이어질 수 있어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임

- 국민개세주의(國民皆稅主義) 입장에서 본다면 작은 세금이라도 부담하는 계층이 많아야 납세의식이 선진화되고, 세율구조도 '넓은 세원 낮은 세율' 구조가 되어야 세수기반이 튼튼해질 것임

3. 소비세

□ 우리나라의 소비세(부가가치세) 부담은 매우 낮은 수준이며, 이는 낮은 세율과 많은 간이과세자 비율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율 10%는 OECD 회원국 중 32위이고, OECD 평균 부가가치세율은 19.3%에 달함

- 2010년 대비 현재 세율 변화를 보면 세율 인상국은 19개국이고,²⁵⁾ 세율 인하국은 아이슬란드²⁶⁾ 1개국 뿐임
- OECD 평균 부가가치세율은 2010년 18.2%에서 현재 19.3%로 상승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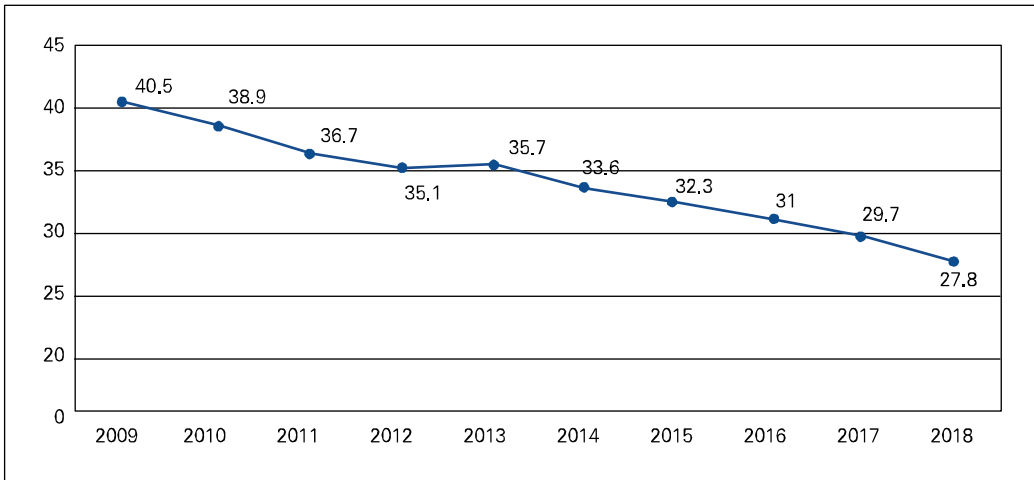
○ 간이과세자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그 비중이 작지 않아 일반과세자와의 조세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간이과세제도는 소규모사업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1995년 도입되었고, 매출액 48백만 원 미만자에 한해서 공급업종별 부가가치율(5~30%)에 세율 10%를 곱하여 과세하여 세부담을 완화해 주고 있음
-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실질에 부합하지 않게 훨씬 낮게 설정되어 있어²⁷⁾ 과도하게 세부담을 경감해 주고 있으므로 조세형평에 위배될 것임

- 18) 산출세액 130만 원 기준 55% / 30%, 50~74만 원 한도
- 19) 다자녀(2자녀 각 15만 원, 3자녀부터 30만 원), 출생 및 입양(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70만 원)
- 20) 의료비·교육비(지출액 15% 공제), 기부금(15%, 1천만 원 초과 30% 공제), 보장성보험료·연금저축(12% 공제), 표준공제(근로자 13만 원, 사업자 7만 원)
- 21) 연금저축, 퇴직연금 납입액 12% 공제
- 22) 종합소득에 배당가산된 배당소득의 11% 공제
- 23) 총급여액이 12백만 원을 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 12만 원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임
- 24) 문재인 정부 첫 해인 2017년 소득세 최고세율(40→42%)을 인상했고, 지난해에는 종합부동산세율 등을 인상했음. 2019 세법개정안에는 근로소득공제에 대해 한도를 2,000만 원으로 설정하는 등 고소득근로자에 대한 공제혜택을 줄이는 내용을 담았음
- 25) 그리스, 스페인, 일본, 포르투갈, 뉴질랜드, 영국, 핀란드,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슬로베니아, 체코, 이스라엘, 폴란드, 슬로바키아, 프랑스, 스위스
- 26) 25.5% → 24%로 1.5% 인하했음
- 27) 예를 들어, 건설업의 경우 실질부가가치율은 46.6%에 달하지만 법정부가가치율은 30%에 불과함(송민경, "간이과세제도의 현황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18, p.9)

〈그림 2〉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 비율

(단위: %)



자료: 국세통계연보.

□ 국제적으로 많이 낮은 소비세의 부담 수준을 높이려면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하거나 과도한 간이과세자에 대한 혜택을 줄여야 함

○ 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간이과세제도의 업종별 부가가치세율을 현실화하고 간이과세자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 실현 가능한 방안임

IV. 요약 및 결론

□ 우리나라는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면서 복지자원 등 재정수요의 확대 지출을 대비하기 위해 조세구조 개편이 필요한 상황임

- OECD는 조세규모를 늘리지 않고 조세구조를 개혁함으로써 경제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국가 전체의 세수규모는 동일하게 유지하되 법인과 개인 소득세는 줄이고 소비과세와 재산과세를 늘리는 방향으로 조세구조를 개편할 것을 제시하였음²⁸⁾
 - OECD 보고서에 따르면 법인소득과세, 개인소득과세, 소비과세, 재산과세 순으로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세목별 비중 및 GDP 대비 조세부담을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법인세 부담이 높고 소득세와 소비세의 부담이 낮아 재정수입, 특히 국세수입의 확대를 위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세구조조정방안이 필요함

□ 주요 세목별 부담수준의 조정은 법인세 부담의 완화와 소득세 및 소비세 부담의 강화가 동시에 이뤄져야 할 것임

- OECD 8위 수준인 법인세 분야는 부담수준을 낮추고 국제적인 법인세 인하 추세에 부합하기 위해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하고 과세구간을 줄여야 함
- 부담수준이 매우 낮은 소득세 분야는 부담을 높이기 위해서 과도한 비과세·감면을 점진적으로 줄여서 면세자 비율을 낮춰야 함
- OECD 31위로 최하위 수준인 소비세의 부담을 높이면 과도한 간이과세자에 대한 혜택을 줄여야 함

참고문헌

- 기획재정부,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내용”, 2019.8
- 송민경, “간이과세제도의 현황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18
- 조경엽, “법인세 비용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연구원, 2019
- _____, “법인세 인상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경제연구원 세미나 발표자료, 2016
- _____, “법인세, 누가 부담하는가?”, KERI Insight 15-10, 한국경제연구원, 2015
- OECD, “Tax Policy Reform and Economic Growth”, 2010
- OECD, “Revenue Statistics 2018”, 2018

28) OECD, “Tax Policy Reform and Economic Growth”, 2010